경제혁신
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보 도 자 료
희망의 대한민국
http://www.motie.go.kr
2015년 12월 21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12.20일(일)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유법민 과장(4520), 주현수(4525) · 이충렬(4526) 사무관

기업의 연구책임성 강화 및 연구현장 애로 제도 개선

- 기업 현금부담률 상향, 과제 수행 총량제 도입 등 -
- 관련 R&D규정 개정으로 내년부터 본격 시행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연구개발(R&D) 사업의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유도하고, 연구자 중심으로 R&D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등 3개 규정을 개정('15.12.21)하여,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개정 규정 : 산업부 연구개발(R&D) 사업의 공통적인 운영기준인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과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등 3개 규정

○ 이번 산업부의 연구개발(R&D) 규정 개정은 최근에 추진된 '국가 연구개발비 비리방지대책('15.3)', '정부 연구개발 혁신 방안('15.5)',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제도개선 방안('15.10)' 등에서 확정된 연구개발(R&D) 사업의 평가 관리 강화 방안의 현장적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한편,

○ 기존 제도 중 수행기관의 연구활동에 애로로 작용할 수 있는 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연구자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하였다.

□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정부 연구개발 정책 반영]

□ 지난 5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정부 연구개발 혁신 방안'에 따라 기업의 연구수행역량에 맞는 정부 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 기업의 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을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하여 상향하여, '16년부터 공고하는 신규사업부터 적용한다.

< 기업의 부담금 중 현금부담률 변경 내용 >

구 분	현 행	개 선
대 기 업	20% 이상	**60% 이상**
중견기업	10% 이상	**50% 이상**
중소기업	10% 이상	**40% 이상**

* 산업별 특성을 고려해 부담률은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적용 예정

○ 또한, 기업의 정부 연구개발 사업의 무분별한 참여와 정부재원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방지하기 위한 '과제 수행 총량제'를 도입하여 산업부 소관 과제는 기업당 당해연도 최대 수행 과제수(주관 + 참여 포함)를 중소기업 3개, 중견기업은 5개로 제한할 예정이다.

* 현재 대기업은 주관기관으로의 참여유형을 제한 중(수요연계형, 시스템형, 고위험형)

□ 기업의 연구 몰입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도 도입된다.

○ 먼저, 과제 수행 내용을 평가한 결과 "성실수행"이 누적될 경우 일정기간 정부R&D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제도도 도입될 예정이다. 다만, R&D수행에 있어서 평가결과 사실상 실패를 용인함으로써 도전적 목표 설정을 장려할 필요가 과제 등은 적용이 제외된다.

* 평가 등급(4개 등급) : 혁신성과, 보통(목표달성), 성실수행, 불성실 수행

< 성실수행 누적시 과제 수행 제한 기준>

비영리 기관	연구책임자가 성실수행 2회 누적시 3년간 사업 수행 제한
영리 기업	연구책임자가 성실수행 2회 누적시 3년간 사업 수행 제한
	주관기업이 성실수행 3회 누적시 1년간 사업 지원 제한

○ 아울러, 연구인력의 최소 참여율(20%) 기준도 마련하여 연구몰입도를 제고하는 한편, 출장비, 식비, 회의비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낮은 참여율(1~5%) 형태로 관련자를 형식적으로 과제에 참여시키는 관행을 방지해 나갈 예정이다.

□ 연구개발과제의 기획 및 사업비 관리 강화를 위해서도 심층검토자(evaluator, 기술성·사업성 심층평가) 및 사업비검증단도 도입된다.

○ 중대형 신규과제 등에 대해서 심층검토자가 사업계획서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과제 선정을 위한 신규평가위원회의 평가전에 보고하도록 하여 평가의 내실을 높이고,

○ 신규과제의 사업비를 전담기관의 과제 담당자와 평가위원회가 1차 검토하여 조정한 후, 사업비검증단이 협약 전에 2차로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사업비의 검증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연구현장 애로 사항 개선]

□ 연구현장의 애로사항을 개선하여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수행기관의 권익도 제고한다.

○ 수행기관의 행정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구매장비의 산업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e-tube) 등록 기준을 현재 1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개선하여 수행기관의 행정부담을 대폭 완화하였으며,

○ 평가결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 개선을 위해 이의신청 기산일을 현재 “전담기관이 결과를 통보한 날”에서 “수행기관이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 개선하여 수행기관의 권익을 향상시켰다.

○ 잦은 규정 개정으로 복잡해진 규정을 공통운영요령, 사업비 요령 등은 연구수행자 중심으로, 평가관리지침은 전담기관 중심으로 정리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 자주 사용되는 용어나 다양하게 해설될 가능성이 있는 용어를 새로이 정의하거나 명확하게 하여 규정이 정확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기타 제도 개선 사항]

○ 사업비의 부정 사용이나 연구 부정행위 등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이 “해당자 ○년 이내”로 명시되어 동일한 위반 사항도 전담기관별 심의위원회 심의과정 중 참여제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어서

- 참여제한 기간 기준을 “해당자 ○년”으로 개선하여 동일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동일 양형이 부과되도록 형평성을 제고하였다.

○ 우대 가점에 있어, 현재 가점을 주고 있는 “혁신성과”와 동일한 등급인 “조기종료(혁신성과)”에 대해서도 가점을 부여하고,

- 성과활용평가 우수과제와 관련하여 현재 수행기관중 기업만 가점을 주고 있으나 비영리기관까지 가점 부여를 확대하고,

- 기술이전 실적이 우수한 수행기관중 비영리기관의 연구책임자만 가점을 주고 있으나 영리기관의 연구책임자까지 가점 부여 대상을 확대하였다.

○ 그 외의 개선사항으로는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의 사업비 사용 증빙서류에 현금영수증을 추가하였으며,

- 수행기관이 독립적으로 과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과제별 ‘운영위원회’ 구성원 중 담당공무원, 전담기관 담당 부서장을 삭제하였다.

[규정 개정 사항 안내]

□ 산업부는 사업 참여자에 대한 폭 넓은 정보제공을 위해 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전담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개정 사항에 대한 안내 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 '16년 1월부터 '사업설명회'를 통해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등에서 개정된 개정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 규정 설명회 일정 >

일 시	1월 11일(월)	1월 12일(화)	1월 13일(수)	1월 19일(화)
지 역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 상세 일정 및 장소는 2016년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문('15.12.23. 공고 예정) 참고

□ 도경환 산업기반실장은 "근번 규정 개정을 통해서 도입된 연구개발과제 수행 총량제, 연구원의 최소 참여율 등을 통해서 수행기관의 연구개발 몰입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연구개발 과정에 수행기관이 느끼는 다양한 애로 사항은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규정 개정의 주요 내용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주현수 사무관(☎ 044-203-4525), 이충렬 사무관(☎ 044-203-452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MIN TRA

붙 임 규정 개정 주요 내용

□ 개정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고시, 이하 공통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고시, 이하 사업비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예규, 평가관리지침)」 등 3개 규정

□ 주요 개정 내용

구 분	개정 내용
□ 최근 정부 연구개발 개선 정책 후속조치	
【산업기술 R&D 제도개선 방안('15.10)】	
○ 에너지분야 기술분류 정비	- 에너지분야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기술분류를 세분화 (공통요령)
○ 심층검토자(Evaluator) 제도 도입	- 사업규모가 큰 중대형 신규과제 등은 심층검토자가 분석한 결과를 사전에 평가위원회에 보고토록하여 평가의 전문성 확보 (평가관리지침)
○ 사업비 검증단 운영 근거 마련	- 중대형 신규과제 사업비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사업비검증단' 도입 (평가관리지침)
○ 개념평가 업무 간소화를 위한 절차 개선	- 경쟁률이 3:1 미만인 품목지정형 과제의 경우 개념평가 생략 (평가관리지침)
○ 산업기술혁신평가단 전문가 풀 확대	-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의 산업기술혁신평가단 신청 의무화 (공통요령)
○ 최종평가의 결과 中 "보통" 판정 기준 상향 조정	- 최종 평가결과의 보통 판정기준 상향 조정 * 보통 판정 기준: (現) 70~90 → (改) 75~90
○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 기준 마련	- 연구개발 몰입도 제고 등을 위해서 최소 참여율 기준을 20%로 설정(공통요령)
○ 동일 장비 및 시설의 중복 계상을 방지	- 다수 과제에 투입된 동일 장비 및 시설은 현물 산정 총액이 구입가의 10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 명문화(사업비 요령)

구 분	개정 내용
○ 성실수행 누적 시 참여 제한	- 적극적인 연구목표 달성을 촉진하기 위한 성실수행 누적 시 참여제한 조치(공통요령)
○ 기업의 현금 부담비율 상향 조정	- 기업역량에 맞게 정부 R&D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현금 부담 비율 상향(공통요령)
○ 연구수행 총량제 도입	- 기업의 무분별한 정부 R&D 참여 및 정부재원 의존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규모별로 동일기간 수행가능한 과제수 제한(공통요령)
【산업 R&D 성과관리 현황 및 개선방안('15.6)】	
○ R&D 사업 성과확산을 위해 최종 보고서 공개 확대	- 성과확산 및 연구수행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기술료 징수과제에 대한 전담기관 방문열람을 온라인 공개로 개선(공통요령)
○ 정부 지원으로 비영리기관이 획득한 무형적 성과물의 중소기업 활용 확대	-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을 위해서 비영리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을 기술개발 완료 후 바로 필요한 중소기업에게 실시권 부여(공통요령) * 현재 참여기업에게 1년6개월 동안 우선실시권 부여중
○ 성과활용 평가결과 최하위 등급 감점 부여	- 성과활용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을 받은 수행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책임자는 3년간 감점 부여 (평가관리지침)
【산업부 R&D 사업 특허성과 이중제출 조치계획('15.5)】	
○ 특허성과 부정 제출 시 제재 부과	- 특허성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중복제출하는 경우 참여제한(1년) 조치(공통요령)
【국가 R&D 연구비 비리방지대책(안) (관계부처 합동, '15.3)】	
○ 학생인건비 부당 사용에 대한 재제 조치 강화	- 학생인건비의 용도외 사용시 참여제한 5년, 출연금 전액 이내 환수 신설(공통요령)
【투자활성화 대책 (관계부처합동, '15.1)】	
○ 우수 기술 보유 기업의 정부사업 참여확대를 위해서 기술신용평가제도 도입	-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기업의 경우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제한 조건 미적용(평가관리지침)

구 분	개정 내용
□ 운영상의 미비점 및 애로 사항 개선	
【운영상 미비점 개선】	
○ 용어의 정의 신설 및 개정	- 자주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고, 해석의 여지가 있는 용어는 의미를 명확하게 명시(공통요령, 평가관리지침) * 총괄주관기관, 세부주관기관, 총괄과제, 세부과제 등
○ 평가위원회의 심의사항 추가	- 평가결과의 이의신청 심의 업무 추가(공통요령)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검토 대상 확대	- 주관기관만 적용하던 국세 체납처분, 채무불이행, 파산, 부채비율 등 부실위험 검토를 참여기관과 총괄책임자까지 적용 확대(평가관리지침)
○ 협약체결 중지 기간 단축	- 협약체결 중지 후 수행기관이 협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조치하는데 부여한 기간 단축(3개월 → 2개월)(평가관리지침)
○ 산업기술혁신평가단 관리 개선	- 평가단 구성을 위한 전문가 검증 절차 마련 및 정기적으로 정보 업데이트 실시(공통요령) * 2년마다 평가단 정보 현행화
○ 연구노트 관리 강화	- 수행기관 및 총괄책임자의 책임사항에 연구노트 관리사항을 반영하여 연구수행 과정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개선(공통요령)
○ 평가시 사업비 검토 강화	- 신규평가시 '사업비 계상의 타당성'→'사업비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개선(공통요령)
○ 협약체결전 선정취소 기준 현실화	- 현재 협약체결 전에 해당과제의 선정을 취소하는 경우는 사업계획서의 허위 작성 및 동일과제 중복 선정 시에만 가능하나 이를 사업 참여 결격사유 또는 협약해약 사유로 확대(공통요령)
○ 협약변경 승인시 변경된 내용을 반영한 결과 제출 의무화	- 평가결과 통보로 협약변경 승인시, 수행기관은 사업계획서 등에 변경내용을 반영하고 그 결과를 전담기관에게 통보토록 조치(공통요령)
○ 협약해약 사유 추가	- 협약해약 사유에 정부출연금에 대응한 민간부담금의 미부담 사항을 추가(공통요령)
○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는 협약 해약 근거 규정 삭제 * 법제처에서 동 사항은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개선 요청	- 협약의 해약 요건 중 '장관이 산업정책상 과제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항 삭제(공통요령)
○ 참여제한 사항중 산촉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가 부족한 내용 삭제	- 참여제한 대상 중 "기술기반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성과활용실적이 미흡한 경우" 삭제 (공통요령)

구 분	개정 내용
○ 기술료 비징수 과제의 실시권 부여 확대 및 기술료 징수 기준 명확화	- 기술료 비징수 과제의 성과물은 통상실시 원칙(공통요령) - 비영리기관은 실시기관에게 기술이전 시 실소요경비를 제외하고는 기술료를 받지 못하도록 함 (공통요령)
○ 수입금 관리체계 강화	- 수입금은 별도 계좌로 관리하며, 적립된 수입금은 전담기관 승인 후 차년도 사용 (사업비요령)
○ 여성연구원 관련 가점 요건 미유지시 인건비 불인정 조치	- 여성연구원 관련 가점을 받은 수행기관이 사업수행기간 동안 가점조건을 미유지 시 해당 가점 요건의 여성연구원 인건비는 불인정 (사업비요령)
○ 정산시 신규채용 여부 확인	- 신규채용 인력의 실재 채용 여부 확인을 위해 정산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의무화 (사업비요령)
○ 보고서 미제출 과제 처리 기준 개선	-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문제과제 또는 "중단(불성실)", "불성실 수행"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 마련(평가관리지침)
○ 사전 지원제외 사항인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기준 적용 대상 확대	- 사전검토시 주관기관만 적용하던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부채비율 500%이상, 유동비율 50%미만 등) 기준을 참여기관도 적용 (평가관리지침)
○ 협약중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의 중단조치 적용 대상 명확화	- 계속과제중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의 사유로 협약 중단조치 후 개선되지 않을 경우 주관기관에 한하여 중단(성실, 불성실) 조치하고 참여기관은 교체 등의 조치(평가관리지침)
○ 협약의 변경 신청 시점 및 처리 기한을 명확하게 명시	- 협약 변경사항 발생 즉시 신청하되, 협약 변경 신청은 해당연도 협약 종료 1개월 전까지 가능(공통요령)
○ 영리기관 및 비영리기관의 간접비 증액 기준 명확화	- 간접비 증액 기준 명시(사업비요령) * 영리기관 : 직접비의 10% 이내에서 통보 * 비영리기관 : 최초 협약시의 예산 초과 불가
○ 비영리기관의 시험분석료 자체 지급 기준 명시	- 공인 시험분석서를 발급하는 비영리기관만 시험분석료의 자체 지급 가능(사업비요령)
○ 기술료 비징수 과제 유형 명확화 및 수행기관 자격 확대	- (유형)기술 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의 기술료 비징수 근거 추가 (공통요령) - (대상)영리기관도 기술료 비징수 과제 수행 가능 (공통요령)
○ 참여제한 양형기준 통일화	- 참여제한 기간의 양형 기준을 통일화하기 위하여 참여제한 기준을 '0년 이내'에서 '0년'으로 개선(공통요령)

MIN TRA

구 분	개정 내용
【수행기관 애로 사항 개선】	
○ 외부인건비 지급 절차 개선	- 인건비 지급시 원소속기관 부서 "경유"→ "통보"후 지급(사업비요령)
○ 주관기관의 참여기관 출연금 지급 기한 단축(RCMS 비적용 기관)	- 주관기관의 참여기관 사업비 지급 기한을 15일→7일로 단축(사업비요령, 평가관리지침)
○ 장비 의무등록 기준 완화	- e-tube 시스템 등록 기준을 1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완화 (공통요령)
○ 우대 사항 정비	- 우대 가점 적용의 형평성 제고(사업비요령) * "혁신성과" 과제에 "조기종료(혁신성과)" 포함 * 성과활용 우수기업을 우수기관(영리+비영리)으로 개선 * 기술이전 실적 우수 기관을 비영리에서 영리까지 확대
○ RCMS 사업비 사용 증빙서류 확대	- 법인세법에 따른 현금영수증을 사업비 집행 증빙자료에 포함(사업비요령)
○ 연구수당 지급 시기 및 최소지급 기준 미이행시 불인정 조치	- 연구수당은 사업 평가 종료 후에 지급토록 명문화(사업비요령) - 중소·중견기업이 연구수당 최소 지급 기준인 인건비의 10%를 미지급한 경우, 해당 차액은 사업비 불인정(사업비요령)
○ 과제별 '운영위원회'를 수행기관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개선	- 총괄과제와 세부과제로 구성된 과제의 '운영위원회'를 수행기관이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토록 개선 (평가관리지침) * 현재 산업부 공무원 및 전담기관 담당 부서장이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명시되어 있어, 이를 삭제
○ 서면 통보하는 협약변경 사항 추가	- 특허출원비 증액 등의 사유로 영리기관의 간접비 변경시 전담기관 서면 통보 개선 (공통요령)
○ 성과활용 평가 대상 단일화	- 성과활용 평가 대상 과제가 "기술개발 종료 후 2년 혹은 3년 지난 과제" → "기술개발 종료 후 3년이 지난 과제"로 단일화 (평가관리지침)